

지방자치 정책Brief

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를 위한 공공위탁 활용방안은?

공공위탁이란?



○ 개념

-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변동에 관계없이 운영을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의미함

○ 활용 현황

- 현재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상 사무위탁 방법이 운영되고 있으나,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50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은 미미한 수준임
- 그 원인은 위탁 사안이 단위사무로 위탁 성과가 크지 않음은 물론,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종합행정원칙상 자치단체 내외적 불만요인이 되었기 때문임

공공위탁 왜 필요한가?

○ 행정환경의 변화

-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,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특성 변화 등은 지방자치단체 내 제한적인 인력운영의 여건상 기능 수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임

○ 행정 운영의 유연적 대응

-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구과소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식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,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조직이나 인력을 공동활용하는 새로운 위탁형태의 모색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

일본의 공동설치 사례

○ 일본의 공동설치 사례

-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무위탁 방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 조직의 공동설치나 인력의 공동운영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동설치 방식을 활용(일본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7)
- 2014년 사무위탁 5,979건, 공동설치 416건이 행해짐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설치 가능한 기관

구분	공동설치 가능한 기관 등	설치(예)
조직	의회사무국(그 내부조직)	의회사무국
	위원회 및 위원	인사위원회, 교육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등
	부속기관	개호인정심사회 등
	행정기관	보건소 등
	장의 내부조직	세무과 등
	위원회 및 위원의 사무국	
인력	의회 사무의 보조직원	의회사무국의 직원
	단체장의 사무의 보조직원	건축주사, 통계주사 등
	위원회 및 위원 사무의 보조직원	인사위원회 사무의 보조직원 등
	전문위원	

출처: 일본 지방자치법

공공위탁 확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?

○ 공공위탁 유형확대를 위한 법제화

- 조직이나 인력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공동설치 가능 규정 신설 고려
- 법제화 예시

제151조의 2 (공동설치)
제151조의 2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51조에 의한 사무의 위탁을 지방자치단체 간 기관의 공동설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다.

○ 공공위탁 대상 사무 추출의 프로세스 구축

1 단계
대상부분의 확정

사무의 성격 : 집행적(vs. 계획적)인 경우
서비스공급 특성 : 시스템 대응적 (vs. 상황대응적)인 경우

▼

2 단계
위탁여부의 결정

공공성이 높고 경제성이 낮은 경우

▼

3 단계
위탁방식의 결정

진행과정상 관여가 필요한 경우 ▶ 공동설치
사후감독으로 충분한 경우 ▶ 사무위탁

○ 공공위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시스템 마련

-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 및 절차 명시화
- 지자체 경영혁신평가에 반영
- 공공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

▶ 내용문의 : 강영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, kyj77@krila.re.kr)

▶ 본문보기 : 권오철·강영주(2015), 「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

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